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3월 31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민원인의 부당한 언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폭언·폭행 등’으로 표현된 개념이 모호하여 반복적·악의적

민원, 무리한 요구 등의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와 대응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특이민원’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반복 민원, 장시간 통화, 집기 파손 등의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함으로써 대응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여 회복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